

배포 일시	2023. 2. 2.(목)		
담당 부서	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	책임자	과장 박정호 (044-201-3742)
		담당자	사무관 박종근 (044-201-3743) 주무관 김효은 (044-201-3744)
보도일시	2023년 2월 3일(금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2. 3.(금) 06:00 이후 보도 가능		

개발제한구역 내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 추진

- 3일부터 「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」 개정안 행정예고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고령자 등 교통약자*를 대상으로 보건·의료·금융·문화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“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”을 주민지원사업**으로 지원하기 위한 「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」 개정안을 행정예고(2.3.~2.23.) 한다고 밝혔다.

* 고령자, 장애인, 임산부,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,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(교통약자법)

**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생활편익과 복지의 증진 및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 위한 지원사업

○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생활편익, 복지증진, 소득증대, 환경문화, 생활공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,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 등 교통약자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.

○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고령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보건(세탁, 목욕, 이·미용), 의료(진료, 당뇨검사, 마음건강), 금융(채무상담), 문화(예술, 공연)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 유형으로 새로 추가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.

□ 이번 개정안은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 추진 근거와 함께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적정 예산편성, 조정근거 등도 개정할 예정이다.

- * 주민지원사업 중 도시·군계획시설 연차별 지원항목 조정 등
 - (현행) 1차 연도 설계비+보상비, 2차 연도 사업비, (변경) 1차 설계비, 2차 보상비+공사비

□ 국토교통부 박정호 녹색도시과장은 “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” 라고 밝혔다.

□ 개정안 전문은 2월 3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(www.molit.go.kr)의 “정책자료-법령정보-행정예고” 에서 볼 수 있으며, 우편·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- * 의견제출처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
전화: 044-201-3743, 3744, 팩스 044-201-5574



참고

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개요

- 개발제한구역 내 엄격한 규제로 인해 낙후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,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주민지원사업 지원
 - (근거) 2000. 1. 28. 제정된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같은 해 7. 1.부터 시행
 - (재원) 개발제한구역 내 대규모 건축물,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자에게 징수한 보전부담금을 재원
 - * ('20년) 881억원 → ('21년) 951억원 → ('22년) 922억원 → ('23년) 880억원
- (추진체계) 개발제한구역 지원은 국가에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고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사업 시행
 - 주민지원사업은 지자체 재정자립도*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
 - * 40%초과: 국비 70%, 30%초과~40%이하: 국비 80%, 30%이하: 국비 90%
 - 관리보조는 시·도 및 시·군·구에 예산범위 내에서 개발제한구역 면적, 주민수, 구역관리실태 등을 고려하여 배분
 - * 관리보조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활동에 필요한 출장비, 단속장비 구입, 경계표석 설치 등에 사용
- (지원대상) 생활편익·복지증진·소득증대 및 환경·문화사업 등은 간접지원방식이고 생활비용보조사업('09년 도입)은 현금지원

<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>

구 분		사 업 내 용
생활 기반	생활편익	도로, 주차장, 공원, 상·하수도, 소화천, 오수처리시설 등
	복지증진	마을회관, 어린이놀이터, 어린이집, 유치원, 경로당, 노인복지관 등
	소득증대	공동작업장, 공동창고, 주말농장, 자연생태 및 화훼마을 등
	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	보건(세탁, 목욕, 이·미용), 의료(진료, 당뇨검사, 마음건강), 금융(채무상담), 문화(예술, 공연) 등 서비스
	기타	노후주택 개량, LPG 소형탱크 설치, 생활비용 보조, 연구·조사
환경문화(공모)		누리길, 여가녹지, 경관(전통문화) 등
생활공원(공모)		GB내 미집행공원 등의 녹색여가 공간 조성(장기미집행 대책)

- (지원현황) '01년부터 '22까지 총 4,122건 1조 4,641억원 지원